



안전관리

해빙기 안전관리 강화대책

- 산업자원부 -

1. 주진방향

-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확립
 - 시설물 관리기관 및 사업주의 내실있는 자체 안전점검 실시
 - 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작업수칙준수 및 숙지독려
- 점검시설 및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 - 동절기, 해빙기 등 취약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사후관리 철저
 -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투자 유도
- 안전관리 문화의 정착 추진
 - 사업장 및 가정에서의 안전의식 생활화 유도
 - 안전관리 종사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·홍보 강화·기기의 안전이용 방법 및 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등

**가스분야의
중점점검 사항은
타공사장 인근의 배관관리,
도로굴착사전협의,
도시가스배관
순회점검 등이다.**

2. 분야별 중점점검 추진사항

▣ 가스분야

- 타공사장(지하철, 도로, 상·하수도 등) 인근의 배관관리 철저
 - 굴착공사시 시공자에 대하여 도로굴착 사전 협의 이행철저
 -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순회점검 및 입회감독 강화
- 가스시설 취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운전절차 및 사후방법 교육

▣ 전력분야

- 지하 공동구의 전력케이블 합선 및 누선 가능 여부 점검강화
- 전력구조물의 균열, 붕괴여부 확인
- 전력선 부근의 건설현장 및 취약지역 순찰강화
 - 건축물과 전력선의 충분한 거리확보 및 위험성 경고문 부착
- 배전선로상의 까치집 등 합성요소 지속적인 제거
- 전력설비의 부싱, 애자류에 쌓인 먼지 제거작업 실시

▣ 광산분야

- 쟁내 운반시설, 화재 및 가스재해 등이 우려되는 광산에 대한 점검
- 작업장 붕괴,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순찰 강화
 - 정밀조사, 계측조사 및 지반 보강공사 등 계속 실시

▣ 국가공단분야

- 단지내 안전관리 취약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관리하여 안전성 제고 유도
 - 안전취약업체 현황 카드화 관리, 안전점검 노력, 홍보강화 등
-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사전에 위험요소 발굴, 예방조치

▣ 석유화학 및 일반 제조업분야

- 울산, 여천 등 석유화학단지의 안전관리위원회 활성화 유도
- 소방훈련 및 고압가스 정기검사
-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강화
 - 작업전 철저한 작업계획 및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
 - 충분한 안전보호 장구의 비치 의무화

3. 해빙기 주요 안전관리 추진계획

▣ 재난위험시설의 일제조사 시행

- 근거: 국무총리실로부터 재난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일제 조사하고 점검결과 제출토록 요청
- 대상기관: 15개 재난관리기관
- 대상시설: 지역별, 소관별 주요시설물 및 건축물
- 조사기간: 2000.2~4월 중
- 조사결과: 시설의 안전성에 따라 재난관리 대상시설 및 안전등급을 조정 관리하고 국무총리실에 보고

▣ 가스안전관리 종합평가제 도입시행

○ 배경

- 대형 가스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시설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취급자의 관리소홀 등 운영상의 문제점에서 비롯한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종합평가제 실시

○ 적용시기: 2000 3월부터

○ 평가기관: 한국가스안전공사

○ 대상시설: 전국 32개 도시가스와 684개 LPG 충전소

○ 보험료 할인: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해 보험료 최고 25% 까지 할인

○ 평가기준: 시설기준, 안전관리 운영상태, 위험 요소 제거, 사고 유형 및 사고발생시 대응책 등

▣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

○ 배경

- 인천노래방 화재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부처 협동으로 노래방, PC방 및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(159개) 점검 결과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 보완
· 전기안전공사가 2년에 1회 검사를 실시하나 실내장식 및 구조의 잦은 변경으로 누전, 합선 등에 의한 사고위험 상존
· LPG 사용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나 검사없이 사용하고 있어 가스사고 위험 노출

○ 개선추진방향

-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허가 등록 및 신고시 전기안전공사의 점검 확인서 첨부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관련법령 개정
- 행정관청의 개·보수 명령 불이행시 전기공급자(한전)가 단전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게임 및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다중이용시설로 지정하여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(2년 1회→1년 1회 이상)

- 각종 영업행위신고시 가스시설 완성검사 필증제출 의무화

▣ 지하 공동구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추진

○ 공동구 설치시설: 전선, 지역난방배관, 상수도, 정보통신망 등

○ 우리부 관리기관: 한전, 전기안전공사, 지역난방공사(공동구 관리기관: 시·군 및 각지역 시설관리공단 등)

○ 안전관리강화

- 지하공동구 실시 관련기관과 협동점검 시행
-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안전조치 및 대응책 강구

▣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한 대상시설 안전 관리계획 수립

○ 근거

-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거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5년주기로 유지 관리계획수립 시행토록 규정

○ 관련기관: 한전 등 7개기관

○ 대상시설: 항만, 댐, 건축물, 폐기물 등 38개시설

○ 계획내용

-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
-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, 인원 및 장비 확보
-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사항 등

▣ 해빙기대비 안전관리추진실태 점검

○ 일시: 2000.3~4월중

○ 주관: 관련 실·국 및 안전대책반

○ 내용: 한국전력등 15개 재난관리기관의 해빙기 안전관리강화 추진실태 지도·점검으로 실효성 제고